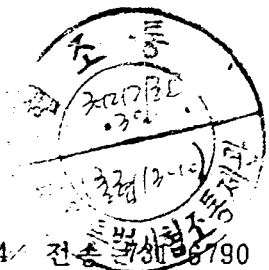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 02 ) 731-6391-4 / 전송번호 6790

문서번호 주개58533- 1642  
 시행일자 1993. 8. 9.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준영구	양정	
주택국장	전결		
주택개량과장	<del>전결</del>	법무담당관실사필	
개량 2 계장	<del>전결</del>	개량계획계장	
기안	이 경 응	결재	

제목 주거환경 개선계획수립 고시(미아2·도봉2·수유2) 및 시행자치청



1. 건설부고시 제92-245호(92.5.21) 및 92-561호(92.10.23)로 지구지정된 미아2·도봉2·수유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개58533-1425호(93.7.13)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였기 같은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수립 고시하고자 하며,
3. 도봉2지구는 같은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사업시행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지정코자 합니다

- 첨부 1. 고시안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서 1부
  3. 건설부공문 1부. 끝.

(제 2 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재 의뢰

1. 우리시 관내 미아2·도봉2·수유2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게재구분 : 고시
- 나. 게재건명 :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 다. 법규근거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첨부 고시문 사본2부. 끝.

수신 도봉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통보

1. 귀구에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보고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미아2·도봉2·수유2)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도록하고 다음사항에 유념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가.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에 통보하여 도시계획사항 처리등 관련과와 협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되도록 조치하고, 별첨 건설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바람.

나. 해당주민에게 반상회, 통·반장을 통하여 안내문을 작성 전달하고 설문조사 서식에 의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설문조사서 첨부 보고할것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서 1부

3. 건설부지시공문 사본 1부. 끝.

##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통보


1. 우리시 관내 미아2·도봉2·수유2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서 1부. 끝.

## 주택개량과장

수신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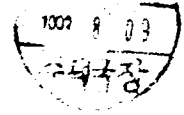
원본대조  


( 제 5 안 )

수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사장

참조 재개발부장

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통보



1. 우리시 도봉구 도봉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귀공사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본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도서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동사업시행에 따른 철거, 보상, 이주가수용등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47호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고시번호	1993. 8. 209	209
담당자	법제실장	사무담당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1. 건설부고시 제92-245호(92.5.21) 및 92-561호(92.10.23)로 지구지정된 미아2·도봉2·수유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제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기 같은법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 도봉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및 도시개발공사 재개발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3. 8.

서울특별시 장

가. 개선계획수립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구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시 행 방 법
미아2	도봉구 미아2동 791일대	35,067	현지개량
도봉2	" 도봉2동 86일대	5,652	공동주택건설
수유2	" 수유4동 108일대	15,244	현지개량

나. 사업시행기간 : 1993. 8. ~ 1996. 8.

다. 사업시행자  
 [ 현지개량 : 도봉구청장  
 공동주택건설 : 도시개발공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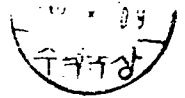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정비계획, 건축물의 개량계획 및 도시계획사항의 결정에 관한 내용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 도봉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및 도시개발공사 재개발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및 도서와 감음)

준 내 조 필

# 미아 제 2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 1. 지구현황

- 가.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미아 2동 791번지 일원
- 나. 면 적 : 35,067 m<sup>2</sup> (10,618평)
- 다. 건 물 동 수 : 240동 (유허가 49동, 무허가 191동)
- 라. 가 구 수 : 473 가구 (가옥주 193가구, 세입자 280가구)
- 마.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수유풍치지구, 북한산자연공원



## 2. 추진경위

- 가. 지구 지정 : 1992. 5. 21(건설부 고시 제 245호)
- 나. 개선계획수립 :
  - 용역발주 : 도봉구청장
  - 용역수행 :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최 재영

## 3. 개선계획

- 가. 시 행 방 법 : 현지 개량(단독 및 다세대주택 건립)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 성 비 (%)	비 고
계		35,067	100.0	
주거 용지	소 계	23,390	66.7	
	택 지	23,390	66.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1,677	33.3	
	도 로	7,565	21.6	가각면적포함
	공 원	3,310	9.4	도시자연공원
	마을회관	247	0.7	공동작업장, 탁아소포함
	노 인 정	142	0.4	
	주 차 장	413	1.2	노외주차장

다. 도시계획 사항의 결정·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풍치지구(해제)

구 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수유풍치지구	도봉구 미아2동 791-1739번지일대	1,515,379	減)15,600	1,499,779	미아 제2지구 주거 환경 개선지구내

○ 공공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자연공원(변경)

구분	공원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북한산 자연공원	도봉구 미아2동 791-1779번지일대	44,010,126	減)31,757	43,978,369	미아 제 2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원시 설중 나대지 일부 (3,310m <sup>2</sup> )를 제외 한 공원시설 해제

- 도 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미아동)	종 점 (미아동)	면 적 (m <sup>2</sup> )	
										지구내	지구외
기정	중로	3	53	12	221	일반도로	보조간선	791-3528	791-2944	1068	1044
신설	소로	2	1	8	112	"	집산도로	중로3-53	소로 3-1	896	
"	"	3	1	4	412	"	구획도로	중로3-53	중로 3-53	1418	230
"	"	3	2	4	30	"	"	중로3-53	소로 3-1	120	
"	"	3	3	4	43	"	"	소로 2-1	소로 3-1	172	
"	"	3	4	4	31	"	"	소로 2-1	소로 3-1	124	
"	"	3	5	4	44	"	"	소로 2-1	소로 3-1	176	
"	"	3	6	4	26	"	"	소로 2-1	소로 3-7	104	
"	"	3	7	4	83	"	"	중로3-53	소로 3-1	332	
"	"	3	8	4	23	"	국지도로	소로 3-7	소로 3-1	92	
"	"	3	9	4	78	"	"	486-121	소로3-11	312	
"	"	3	10	4	23	"	"	소로 3-9	791-2973	92	
"	"	3	11	4	89	"	"	중로3-53	791-1359	130	226
"	"	3	12	4	23	"	"	"	791-2389	92	
"	"	3	13	4	200	"	"	791-1742	791-1845	325	475
"	"	3	14	4	75	"	"	중로3-53	소로3-13	300	
"	"	3	15	4	98	"	"	"	"	392	
"	"	3	16	4	32	"	"	791-1887	소로3-15	128	
"	"	3	17	4	98	"	"	791-1926	791-1850	260	132
"	"	3	18	4	15	"	"	소로3-17	791-1865	60	
"	"	3	19	4	33	"	"	"	791-1840	132	

- 주 차 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증) 413	413	
신설	1	노외 주차장	미아2동 산 108-57임	-	증) 303	303	
"	2	"	미아2동791-2754대일원	-	증) 110	110	

# 도봉 제 2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 1. 지구현황

- 가.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 2동 92-101번지 일원
- 나. 면 적 : 5,652㎡(1,710평)
- 다. 건물 동 수 : 111동 (무허가 111동)
- 라. 가 구 수 : 153가구 (가옥주 111가구, 세입자 42가구)
- 마.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 2. 추진경위

- 가. 지구 지 장 : 1992. 5.21(건설부 고시 제 245호)
- 나. 개선계획수립 :
  - 용역발주 : 도봉구청장
  - 용역수행 :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최 재영

## 3. 개선계획

- 가. 시행 방법 : 공동 개량(아파트 건립)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계		5,652	100.0	
공 동 주 택 지		5,602	99	부대 복리시설 및 조경 시설포함.
공공 시설 용지	도 로	50		단지내 도로 제외
	택지로 편입			

### 다. 도시계획 사항의 결정,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사용형태	기 능	기 능 (미아동)	종 점 (미아동)	비 고
기정	중로	1	76	20	39	일반도로	보조간선	86-13대	86-13대	지구내 구간 (면적 : 50㎡)



## Ⅵ. 주택 건설 및 부대복리시설계획

### 1.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계획

#### ■ 주택공급 대상

- 총 153 세대
  - 가옥주 : 111 세대
  - 세입자 : 42 세대

#### ■ 주택공급 규모

- 가옥주 : 분양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
- 세입자 :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6~12평)

#### ■ 주택건설계획

구 분		세대수	층 수	비 고
계		161		
분양 주택	소 계	113		○ 전용면적 기준 ○ 건 폐 율 : 29.9 % ○ 용 적 율 : 191.2 % ○ 주차대수 : 46 대
	18 평	89	6 ~ 12 층	
	15 평	24	6 ~ 8 층	
공공 임대 주택	7 평	48	6 ~ 8 층	

#### ■ 관리계획

- 사업시행시 건축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주택을 건설 및 관리
- 분양주택을 입주자가 자체 관리토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특별관리

## 2. 부대복리시설 계획

○ 지구 북측 진입로변에 상가, 공동작업장, 탁아소, 노인정, 관리사무소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1층, 지상2층(건축연면적 120 평) 규모의 복합건물 계획

- 지하층 : 공동작업장
- 1 층 : 근린상가, 관리사무소
- 2 층 : 노인정, 탁아소

○ 법기준에 부합되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

## 3. 지원방안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월별 분할 상환

○ 용자규모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	호당 1,700만원	국민주택기금 : 1,200
		재 투자금 : 500
전용면적 50㎡ 이하 :	호당 1,900만원	국민주택기금 : 1,400
		재 투자금 : 500

# 도봉구 수유제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 1. 지구현황

- 가. 위 치 : 도봉구 수유4동 108번지 일대
- 나. 면 적 : 15,244 m<sup>2</sup>
- 다. 건물동수 : 87동(유허가 78동, 무허가 9동)
- 라. 가 구 수 : 223가구(가옥주 69가구, 세입자 154가구)
- 마. 도시계획사항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용도지구 : 주차장 정비지구, 최고고도지구

## 2. 추진경위

- 가. 지구지정 : '92. 10. 23(건설부고시 제1992-561호)
- 나. 개선계획수립
  - 용역발주 : 도봉구청장
  - 용역수행 : (주) 남광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형 섭

## 3. 개선계획

- 가. 시행방법 : 현지개량(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 건립)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 성 비(%)	비 고
계		15,244	100.0	
주택용지	소 계	11,795	77.4	
	단 독 주 택	4,097	26.9	
	연립 및 다세대	7,698	50.5	
근 린 섯 활 용 지		150	1.0	
공공시설 용 지	스 계	3,299	21.6	
	도 로	2,869	18.8	
	마 을 회 관	270	1.8	
	어 린 이 놀 이 터	160	1.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규 모				연 장 (m)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	
	등급	류별	번호	폭인(㎡)							지구내	지구외
기정	소로	3	132	6	43	일반도로	국지도로				258	
기정	〃	3	126	6		〃	〃					
변경	〃	3	126	6	110	〃	〃	114-5 대			564	96
신설	〃	3	1	6	56	〃	〃	268-13 도	268-1 도		336	
〃	〃	3	2	6	91	〃	〃	115-1 대	109-4 대		546	
〃	〃	3	3	6	51	〃	〃	108-3 도	268-13 도		306	
〃	〃	3	4	4	34	〃	〃	268-1 도	268-1 도		136	
〃	〃	3	5	4	46	〃	〃	115-1 대	114-6 대		184	
〃	〃	3	6	4	45	〃	〃	108-6 대	111-6 대		180	
〃	〃	3	7	4	52	〃	〃	산49-14임	108-3 도		180	28

건 설 부

우 420-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 500 - 2872 / 전승 500 - 2919

문서번호 주개 58533-626

시행일자 1993. 7. 26.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선결	과장		지	2000	
점	일자 시간	1993 7. 29	결	계	
수	번호	3664	재	계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 및 사업추진

1. 귀시 주개 58533-1035('93. 5.27)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한 미아2, 도동2, 수유2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토록 하고,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보상·이주·가수용등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주민에 사업안내, 용지알선, 행정지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동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당부 주개 30420-29282('91.10.22)호에 따라 동지구에 대한 안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것.

다. 동사업에 부합되는 적절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을 검토할 것.

라. 동사업의 추진실적·및 추진현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지침(주개 58533-200, '93. 4. 3)에 따라 보고에 차질이 없을 것. 끝

건 설 부 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준

